CDI 워크숍 2015-105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와 해소방안

- 일 시 : 2015. 10. 12(월)
- 시 간 : 14:00 ~ 16:00
- 장 소 : 논산시 농어촌공사지사 회의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ChungNam Insitute

목 차

❑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현황 3

❑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와 해소방안 9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5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현황

Ⅰ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현황

1 일반현황

○ 설치근거

-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1조

○ 포럼운영기관 지정협약(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 '07. 5. 23

2 포럼 구성

□ 구성 인원(142명)

○ 임　원 : 39명(상임공동대표 : 이은호 청주대 명예교수)

- 공동대표단 5, 고문 3, 감사 2, 운영위원장 1, 지역원로 11, 자문위원 11

※ 운영위원장 : 최진하 정책특별보좌관

○ 위원회 : 103명(4개 위원회)

- 운영위원 8, 전문위원 37, 분과위원 49, 편집위원 9

※ 2015년 포럼 구성 신규위촉 예정

□ 주요 기능·역할

○ 도내 공공갈등 예방활동을 통한 갈등 조기 해결

- 연구, 토론, 여론형성 및 갈등현장 지원 활동

○ 갈등의 예방·해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지원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 그 밖의 포럼취지 및 목적을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무

3 2014 추진실적

□ 갈등관리 정책 및 현장지원

○ 갈등영향분석 5건 수행

○ 갈등관리 기획과제(갈등사례 연구) 수행

○ 공공갈등 현장지원 35회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갈등 환경협의회 운영
- 청양군 폐기물 매립장 설치 갈등 관련 현장 활동 실시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관련 현장 활동 실시

□ 충남형 갈등관리 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갈등관리 전문가 과정 참석

○ 갈등관리 교육 전문인력 확보

□ 민·관 협력체계 강화

○ 권역별 포럼 연계 사업 실시

- 4대 권역별 포럼 업무협의를 통한 연계사업 선정
- 행정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한 권역별 포럼 경쟁력 강화 실시

○ 갈등관리 홍보 주력

- 정기간행물 '열린충남' 상생+협력 4회 발간

□ 기타

○ 전용 홈페이지 운영 (www.pcpf.or.kr 연중 운영)

○ 갈등관리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

○ 갈등관리 T/F 운영

- 갈등 동향 파악 창구의 다원화, 해결 창구의 일원화
- 관계관, 시민단체, 충남포럼 주축

Ⅱ 2015 주요 업무계획

1 추진방향

□ 갈등 현장중심 지원체계 구축 운영

○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

○ 공공갈등 갈등영향분석 등 道 현안 정책지원

○ 기획과제 연구 등 현안해결 중심 연구

□ 갈등관리 제도 및 절차 프레임 구축

○ 절차적 프레임 구축 및 운영지원

- 道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 갈등관리 제도 보완

□ 갈등예방·관리 역량 강화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활동지원

○ 동향 파악을 위한 언론 모니터링 및 사안별 갈등 분석, 갈등완화기법 전파 등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세부 추진계획

□ 갈등관리 연구

○ 갈등영향분석 연구

- 공공갈등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 갈등원인과 쟁점, 합의형성절차 설계의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 갈등관리 기획과제 연구

- 갈등현안 중심 해결방안 마련 기획연구
- 지역내 상생협력방안 연구

□ 갈등관리 교육·학습

○ 갈등관리담당관 교육연수

- '충남형 갈등관리' 교재를 활용한 시·군 갈등관리담당자, 갈등관리심의위원 대상 교육·학습 실시
- 지역의 '갈등관리주체의 자기책임'에 의한 추진 유도

○ 시·군별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자치단체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역량 강화 노력 지원
- 시·군별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 시급

○ 세미나 및 워크숍개최

- 도, 시·군, 민간 전문가의 유연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갈등예방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현장중심형 갈등관리

○ 현장중심형 사무국 운영

- 지역내 갈등사안의 종합적 관리 체계 수립
- 시·군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지원
- 도내 갈등사안 발생시 신속대응 및 처리 체제 구축

○ 제도 및 절차 프레임 보완

- 위원회·협의회 운영등 절차적 프레임 강화, 갈등관리 주관부서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로 갈등현안 대응 신속성 발휘
- '갈등관리메뉴얼', '기술진단표' 등 갈등관리제도 보완
- 갈등관리목록 정비, 갈등영향분석 대상 선정 등 갈등의 기술적 검토등을 통하여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주제발표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와 해소방안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와 해소방안

2015. 10. 12.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목차

1. 갈등이란?
2. 갈등관리 현황
3. 충청남도 사례분석
4. 향후과제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갈등이란?

1. 갈등의 개념 및 유형
2. 공공갈등
3. 갈등관리와 갈등해결방식
4. 합리적 갈등관리방식

갈등의 개념 및 유형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갈등

- 칡(葛)과 등나무(藤)가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는 의미의 葛藤
-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복잡하게 뒤얽혀 풀기 어려운 상태나, 인간 내면의 상충되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심리적 상태

갈등의 유형

- 원천에 따른 유형
  – 목표갈등, 정서갈등, 역할갈등
- 주체에 따른 유형
  – 개인갈등, 집단갈등, 사회갈등
- 행태에 따른 유형
  – 수직적 갈등, 수평적 갈등

4

공공갈등의 개념 및 주요원인

충남연구원

공공갈등이란

-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 각종 사업 시행과 법규 제정 등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전개되는 갈등
- 공공갈등 중에서도 구체적인 이익이나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갈등을 특별히 공공분쟁(public dispute)이라 함

갈등발생 주요원인

-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님비(NIMBY), 핌피(PIMFY)현상 심화
  – 지자체별 자율성과 독자성 강화된 반면, 책임과 능력은 미흡
- 주민과 정부간, 지자체간,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 조정기구 미흡
  – 비 선호시설 입지선정 등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배제
-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하향식(top-down) 정책결정과정 답습
  – 국가(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간의 인식론적 의사소통 미흡

5

공공갈등 표출 및 변화 및 관리의 필요성

충남연구원

공공갈등 표출 및 변화

-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갈등 확산
  – 경제개발 속에서 이념이나 노동문제 등 계층간의 갈등이 주요 갈등
-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지자체간 갈등 증가
  – 쓰레기소각장 등 비선호시설 입지, 기업유치, 철도역사 등 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공공정책 갈등
- 2000년대부터는 갈등의 대상이 확대 및 다양화
  –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이념갈등 보다 환경, 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갈등이 확산 · 증가

관리의 필요성

- 공공갈등의 지속적 분출
- 갈등발생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 요구
-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 필요
- 제도적 시스템 필요
-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필요
- 갈등 사안의 광역화로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6

갈등관리와 갈등해결방식

충남연구원

갈등관리의 정의

- 갈등관리는 조직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과정임
- 갈등관리는 갈등의 해소뿐만 아니라 갈등을 용인 및 허용하는 것, 그에 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나아가 조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갈등을 조성하는 것 까지를 포괄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

갈등관리방식

- **독자적 해결 방식**
  – 우월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갈등당사자 일방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 **사법적 해결 방식**
  – 재판과 같은 사법기관의 강제적 결정
- **대체적 해결 방식**
  –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갈등관리와 갈등해결방식

충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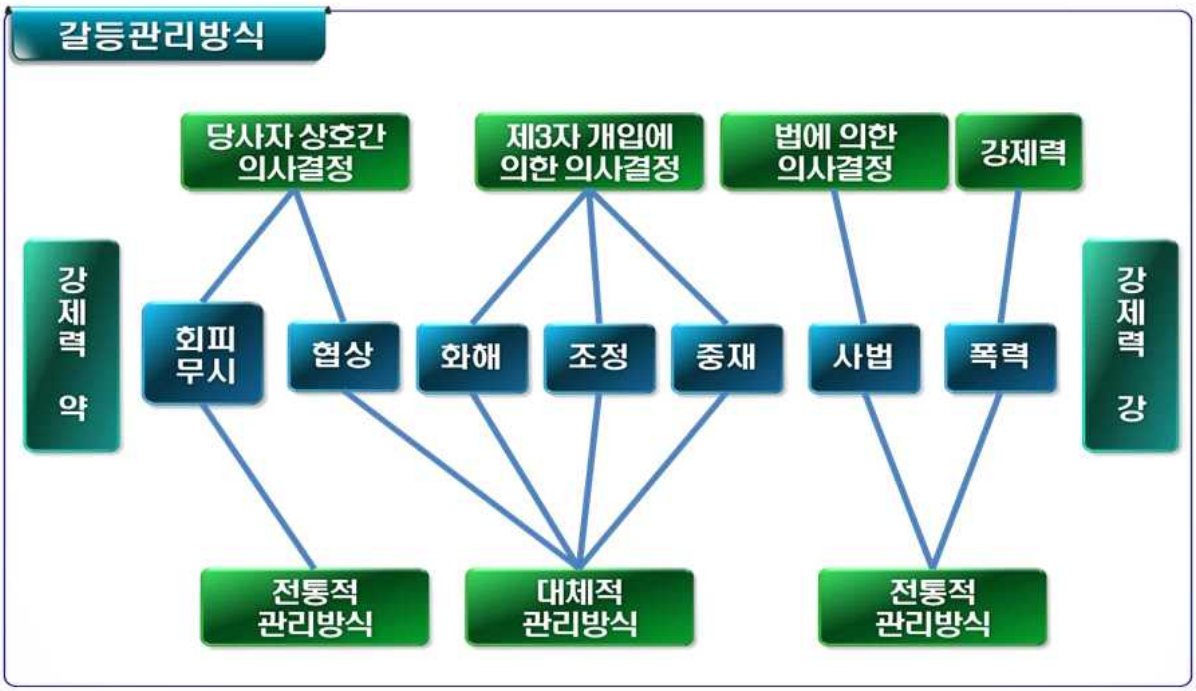

합리적 갈등관리 방식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협상 (Negotiation)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화해 (Concilation)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종지할것을 약정함으로 성립

조정 (Meditation) 중립적 위치의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쉽게 협상 ·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재 (Arbitration) 사인간 분쟁해결을 사인인 제3자에 의뢰, 다만 당사자간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

행정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

9

갈등관리 현황

1. 국내 갈등관리 추세
2.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국내 갈등관리 추세 및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충남연구원

국내 갈등관리 추세

-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 · 시행
  – 정책의 입안부터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원만한 해결 도모
- 2007.11.23. 충청북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 충청북도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각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
- 서울시는 2012년부터 갈등관리 전담조직인 "갈등조정담당관" 신설
  – 現 2개팀 9명으로 구성, 2014년 예산액 6개 사업에 261백만원
- 2015년부터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인천시 민원소통담당관내 갈등관리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갈등관리 이행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 2006년 상생협력 · 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창립
  – 4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 서해안권) 포럼 운영
- 2010. 11. 갈등관리조례를 제정 · 공포
-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갈등관리담당관 토론회 등을 통한 도–시 · 군 간 네트워크 형성
  – 2014. 12월 갈등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
- 2015년 1월 갈등관리팀을 신설

국내 갈등관리 추세 및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충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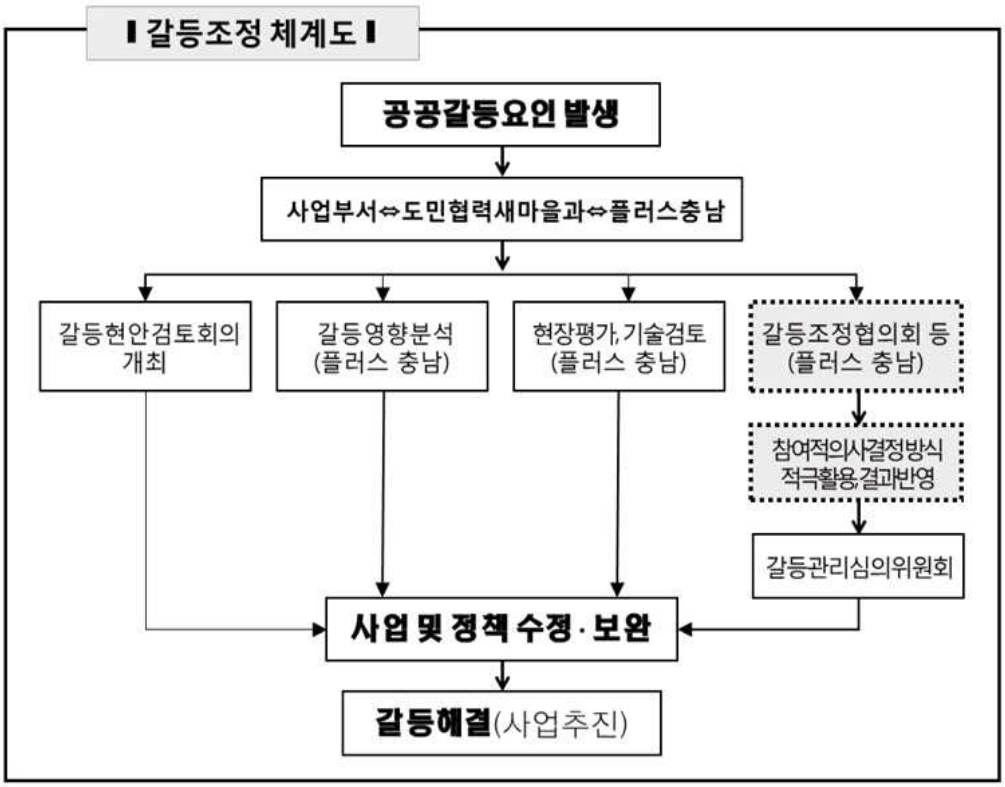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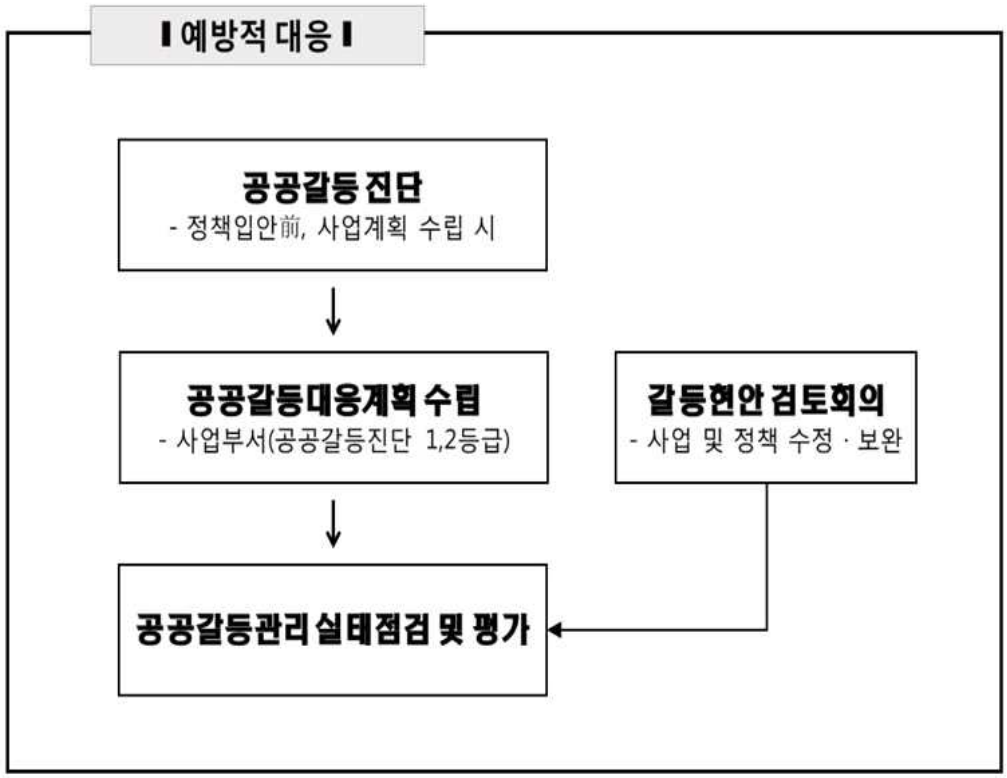

13

충청남도 사례분석

1.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갈등개요

- ✓ 위치 : 보령시 신흑동 산 253-1
- ✓ 소속 : 공군방공포사령부(평택소재)
- ✓ 주요인력 : 96명
- ✓ 주사격종목 : 대공포, 연1회 미사일사격
- ✓ 운영기간 : 150일/년
  - 해수욕장 개장(7-8월), 동절기(12-2), 휴일75일 제외

주요진행경과

- '08. 6 : 지역주민 공군사격장 피해관련 문제 공식 제기
- '09. 4~9 : 토양 · 지하수 오염 조사
- '10. 6 : 공군사격장 인근지역 토양 · 지하수 오염 보도
- '10. 6~9 : 주민건강영향조사(보령시, 호서대)
- '11. 6 :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 요구
- '11. 6~12 : 갓배마을 환경영향조사(환경부)
  패류(굴) 카드뮴 기준초과, 화약성분 검출(RDX)
- '12. 8 : 국회방문 및 사격장 이전 등 건의
- '12. 9~12 : 맹꽁이 서식지 조사완료, 해양오염영향조사(공군)
- '12. 11 : 보령 공군사격장 민원지역 주민설명회(환경부)
- '13. 3 :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대책회의(충청남도)
- '13. 6 : 사격장 주변 수산물 안정성 검사(해양수산부)
- '13. 12 :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관련 주민간담회(충청남도)
- '14 : 선행연구 분석 및 관계기관 워크숍 (충청남도, 충발연)

배경/성격

01 배경 및 원인

보령 공군사격장 운용과 관련하여, 사격시 발생되는 소음 및 탄피의 해양퇴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건강악화로 주변지역 주민들 민원제기

02 성격(특성)

- 보령시 갓배마을 인근 공군사격장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임
- 비선호시설(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불만

15

충청남도 사례분석
충남연구원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쟁점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

- 보령 공군사격장은 미8군 사격장을 시작으로 1981. 7 한국육군으로 이관, 1991. 7 부터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사격장으로 운영중임
- 사격훈련은 모형비행기를 띄워 해상에서 타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탄두 · 탄피 ·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해 해상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임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부대이전

- 지역주민들은 약 50년간 운영된 사격장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건강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임
- 또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군사격장의 이전을 주장함

16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이해관계자

국방부
- 보령 공군사격장 이전 계획 없음
- 2009년부터 3년마다 공군사격장 주변 해양환경 영향조사
- 매년 軍 자체에서 탄두수거(사업비 2억) / ※ 폭발위험성 등으로 민간위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 원인 제공자인 국방부에서 근본적 문제해결에 소극적

환경부
- 사격장 주변지역 암 발생 역학조사 관련, 내부적으로 암 발생 현황검토 및 관계전문가 자문 진행중

충청남도 · 보령시
- 공군사격장은 국방부에서 운영중인 시설로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운영중임
-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중앙부처에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를 지속 추진중

지역주민
- 보령 공군사격장은 연 150일 이상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공군부대 이전을 요구중

충청남도 사례분석
충남연구원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협의체 구성

✓ **목적**
보령공군사격장 주변지역 및 지역민의 환경피해관련 이해당사자와 환경단체 ·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운영을 통한 조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해결 도모

✓ **명칭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 **위원 : 16명(공동대표4인, 위원 12인)**
- 충남도 4인, 보령시 4인, 지역주민 4인, 전문가 · 단체 4인
* 설치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4호

✓ **기능 :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등**

✓ **기간 : 2년(2015. 3 ~ 2017. 3)**

✓ **운영 :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활동**
*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따라 운영

주민주장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지역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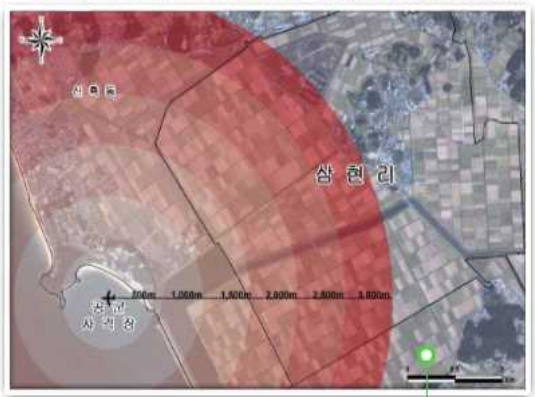

현황도

충청남도 사례분석

2.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갈등개요

- ✓ 사업명 :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전북 익산시
- ✓ 사업규모 : 138.3km(왕복4~6차로)
- ✓ 총사업비 : 27,238억원(보상비 포함

주요진행경과

- '14. 02. 24 : 민간사업제안서 제출(포스코건설 → 국토부)
- '14. 03. 28 : 민간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검토의견 제출
- '14. 04. 09 : 국토교통부 예산군 방문 의견 전달
- '14. 07. 1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 '14. 07. 2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7.24~8.21)
- '14. 08.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광시면사무소)
- '14. 08. 28 :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주민의견서 제출
- '14. 09. 30 : 읍 · 면 의견수렴 결과 보고
- '14. 10. 17 :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 변경촉구에 관한 건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위→국토부, 충청도, 예산)
- '14. 11. 13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과
- '15. 01. 19 : 주민설명회(포스코, 예산문화원)
- '15. 02-03 : 제3자 제안공고에 의한 의견회신 및 제안서제출
- '15. 05. 06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국토교통부 → 포스코)
- '15. 05. 13 : 대책회의(주민, 국토부, 포스코, 충남도, 예산)

배경/성격

01 배경 및 원인

고속도로 노선중 예산군 통과노선이 대흥면 슬로시티 인근지역을 지나면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파괴, 환경훼손을 이유로 집단민원발생

02 성격(특성)

–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 선정으로 인한 갈등임
– 공공사설의 입지와 관련함

20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쟁점

고속도로 건설

고속도로 노선 선정

- 전체 노선 중 예산군 대흥면을 통과하는 약 30km의 구간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중임
- 대흥면을 통과하는 노선은 주민거주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설계가 되어있어, 주민의 정주권 · 재산권 피해와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 및 자연환경(임존성, 대흥동헌, 봉수산 자연휴양림, 황새마을, 예산대흥슬로시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임
- 또한 대흥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여섯번째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고속도로의 건설은 슬로시티 지속과 운영에 방해를 주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임

스마트 IC 건설

-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대흥면 통과구간에는 IC와 쇼핑몰이 복합된 스마트 IC가 건설 예정임
- 휴게소와 복합된 스마트IC가 건설될 경우 인근 지역과 원도심 상권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또한 고속도로 노선이 예당호가 조망되는 곳에 스마트 휴게소 건설을 위하여 대흥면을 통과하고 있다는 주장임

충청남도 사례분석
충남연구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이해관계자

국토교통부

-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균형발전 달성, 수도권과 남부지역간 교통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공공사업임
-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타 공공사업 사례에서도 갈등으로 인하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지연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화와 협의를 통한 조속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시행사

- 최초 제안은 대흥면을 관통하는 노선이었으나,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우회 노선을 제안하였음
-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협의가 필요함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이해관계자

예산군
- 예산군은 충남서부지역 교통요충지로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예산군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나, 다수의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회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 추후 국토교통부, 포스코와 논의를 통하여 군에 유리한 노선을 확정할 계획임

지역주민(대흥면)
- 대흥면은 예당호, 임존성, 대흥동헌과 슬로시티, 봉수산 자연휴양림을 가로지는 기존 노선(안)은 문화재 및 환경, 자연경관의 파괴가 우려된다는 의견임
- 또한 대흥면을 경유하는 노선은 시행사가 예당호를 활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로 이익을 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봉수산 동쪽으로 우회할 것을 요구함
- 대흥면 지역은 과거 예당저수지 조성시 많은 지역이 수몰되었으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시 기존 대전-당진 고속도로와 함께 2개의 고속도로가 위치하게 되는 등 지역주민 삶의터전이 사라짐
-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만 남겨지게 되며, 지역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의겨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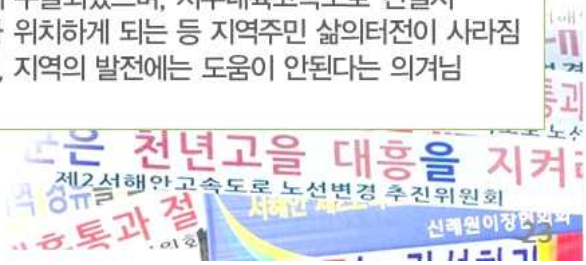

충청남도 사례분석
충남연구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협의체 구성

- ✓ 명칭 :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면 노선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 ✓ 위원 : 15명(위원장 1인, 위원 14인)
  - 지역주민 3인, 시행사 2인, 전문가 5인
  - 공무원 5인 (국토부 1인, 충남도 2인, 예산군 2인)
- ✓ 기능 :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 등 고속도로 건설 협의 · 조정
- ✓ 기간 : 2015. 9. 9~갈등 해결 시 까지
- ✓ 운영 : 고속도로 노선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상호협의

향후과제

1. 타협과 조정
2. 합의 형성단계
3. 공식적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향후과제

충남연구원

타협과 조정 필요

- 대형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갈등은 그 성격이 이익갈등인 경우 협상을 토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나, 가치갈등인 경우 사업자체를 문제로 삼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움
- 현재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갖는 문제점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 정주여건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이러한 우려는 사업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완과 정보공개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진행될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이견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합의 형성단계 필요

- 현재 표출되는 갈등은 관-관, 관-민, 민-민 갈등의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조급한 추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보장 미흡, 정보공개 부족, 공공사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인식 불일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에 이해관계자 간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합의형성단계를 거칠 필요성이 있음

향후과제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공식적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신 및 대립으로 인한 정부와 주민간 갈등은 의사소통 창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 사소한 의견대립에도 갈등이 증폭되기 쉬움
- 이해관계자 면담결과 관련기관 · 지역주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함
- 이에 공식적 협의기구인 '갈등예방협의회'를 구성 · 운영한다면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창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27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부록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4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전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의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 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 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 ·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 ·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 · 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 · 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 배포 · 활용
4. 갈등의 예방 ·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갈등의 예방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